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

제정 : 1981. 8. 21.

개정 : 2021. 9.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보통교육, 고등보통교육,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인하대학교
2. 한국항공대학교
3. 인하공업전문대학
4.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5.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6.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제4조(주소) ①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에 둔다.

② 법인의 연락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6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

타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이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는 임원으로서 15인의 이사(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 4년
2. 감사 :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각 규정에 위반한 때
2. 기타 부정, 부당한 행위로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장애를 야기한 때

③ 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월전까지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개방이사의 정수) 법인은 제14조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개방이사의 자격) ①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학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학교육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법조계,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상장기업이나 30대 그룹 소속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4. <삭제 2021.9.30.>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격으로 추천위원회에서 학교법인 임원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추천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19조(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이 개방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월) 안에 이사장이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18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선임 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인하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11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하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 한국항공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인하공업전문대학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5.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6.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7.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5인

③ 대학평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해당위원회 및 해당 학교 구성원으로 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그밖에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⑥ 감사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해당 감사를 이하 “개방감사”라 한다)
- ⑦ 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이사장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8조(이사회와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으로써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 및 병원의 발전을 도모하며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0조(이사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32조(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4조(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임대업 (토지 건물)
2. 의료사업
3. 의료용품 도매업
4. 영현봉안사업
5. 일반 도소매업
6. 주차장 운영업
7. 기타 상기관련 부대사업

제35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4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일빌딩·인하빌딩·항동창고·동대전 부동산 등의 임대관리사업, 인하영현봉안, 인하국제의료센터 관리사업을 경영한다.

제36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5조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일빌딩 부동산 임대관리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6
2. 인하빌딩, 항동 창고, 동대전 부동산 등 임대관리사무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3. 인하영현봉안 등 관리사무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4. 인하국제의료센터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84

제37조(관리인) ① 제35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8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40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41조(임용)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1. 인하대학교 총장 4년
2.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4년
3.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3년
4.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 3년
5.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교장 3년
6.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 3년

③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기간 :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당해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수당 또는 해당 직급에 준하는 연봉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약정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

6.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임용하며,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교수 : 정년

2. 부교수 : 7년

3. 조교수 : 4년

⑥ 교수 정년에 따른 세부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⑦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및 교무위원 등에 대한 교원의 보직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⑧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중등교원의 임용)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3조(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4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5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간호를 필요로 할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6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5조제1호 및 제9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5조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5조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5조제5호 및 제10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5조제6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5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5조제8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신분 및 복직) ① 휴직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자는 제45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복귀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8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5조제1호 및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병환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5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에 의하여 휴직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9조(직위의 해제)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9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명예퇴직) ① 법인의 일반직원 및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과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인 날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3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 또는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4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및 교무위원 등의 보직 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중등교원에 대한 임용과 보직에 관한 사항
5. 중등교원의 공개전형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각급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임용기간중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4.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기준

제5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각급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 또는 참여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인하대학교는 교학부총장이, 한국항공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은 각 학교의 교무처장이, 중·고등학교는 교감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60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61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6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 로, 이사회 의결을 받은 1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2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65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6조(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7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8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법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9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성희롱 행위등 성(性)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3.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제71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72조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73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과 조교

제74조(자격) ①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기술직 및 고용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5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특별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④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6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0조(법인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인하대학교

제81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의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④ 각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총장은 교수로 보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식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82조(학장 및 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3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지원처, 사무처, 기획처, 연구처, 입학처, 대외협력처, 국제처 및 정보통신처를 둔다.

②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 또한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

③ 각 처·실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85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는 행정실을 둔다. 또한 단과대학에 부학장, 각 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원장 및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실장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한다.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보직자 및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정석학술정보관) ① 정석학술정보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정석학술정보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의료원) ① 인하대학교 산하 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 및 의학연구기관의 운영 전반을 조정 통할하기 위하여 인하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료원장은 의무부총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제반 행정관리업무를 관장한다.

③ 의료원에는 부속병원, 기획조정실, 의생명연구원을 두고 부속병원 산하에 진료부, 경영부를 둔다.

④ 부속병원장과 진료부원장, 의생명연구원장은 교수로 보하고, 경영부원장, 기획조정실장은 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

⑤ 의료원 산하 하부조직의 보직자 및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⑥ 의료원은 교육, 진료, 연구개발업, 의료 해외진출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제3절 한국항공대학교

제89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학장 및 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1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는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연구협력처, 입학처를 둔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사무처장은 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

③ 각처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

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93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는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실의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4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한다.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중앙도서관)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도서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비행교육원) ① 비행교육원에 수색 비행훈련원과 정석 비행훈련원을 두며 비행교육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을 둔다. 원장 및 부원장은 부교수(조종실기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비행교육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한다.

② 삭제

③ 비행교육원 및 비행훈련원에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7조(전자계산소) 삭제

제98조(항공기술교육원) 삭제

제4절 인하공업전문대학

제99조(총장 등) ① 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100조(하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기획처, 교무처, 사무처, 입학학생처 및 취업지원처를 둔다.

② 각 처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 또한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③ 각 처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1조(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① 전문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교수, 부교수 또는 참여로 보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④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2조(부속기관) ① 전문대학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참사 이상 또는 계약직 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보직자 및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3조(도서관) ① 전문대학 도서관의 관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제104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5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제106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7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절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제108조(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9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절 정원

제110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부속병원의 일반직원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1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

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하여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성별, 연령 등을 참작하여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단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 정수의 2배수를 추천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14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1.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다만,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및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제116조(자문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1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이사장의 개선 요구)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학교의 건학이념과 목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대학평의회

제118조(대학평의회의 설치) 대학교육기관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9조(평의회의 구성) ① 평의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4인
2. 직원 : 1인
3. 조교 : 1인
4. 학생 : 1인
5. 동문 : 1인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4인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0조(평의원의 위촉) 학교의 장은 평의회 각 구성단위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 인원의 2배수 이상 추천된 자 중에서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인하대학교)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에서 추천한 자 (각 단과대학별로 1명 추천)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에서 추천한 자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5.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자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

(한국항공대학교)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에서 추천한 자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5.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

(인하공업전문대학)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자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5.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의원은 총장이 위촉

제121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궐위 시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2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3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4조(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125조(공고)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한국일보에 공고한다.

제12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

으로 정한다.

제127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 기
이 사	이 기 봉	4 년
이 사	김 법 린	"
"	안 동 혁	"
"	김 유 택	"
"	윤 성 순	2 년
"	최 규 남	"
"	손 노 디	"
"	표 양 문	"
"	이 원 철	"
감 사	박 만 서	"
"	안 봉 익	1 년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⑥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⑦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 되어 근무

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4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5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속병원 개설에 따른 경과조치) 부속병원에 관한 조항은 의료관계법에 의하여 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 및 조교를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
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않는다.

부칙

이 정관은 199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 제2항의 총무부처장제 폐지에 관한 사항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
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다.

③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당시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
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 부터 개시하여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임기 개
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 단서의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의 통보일은 2002년 9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채용된 교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39조 제4항 각호와 같이 각 직위별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③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이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교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임용기간 종료 2월전 까지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해야하며, 소명의 방법과 내용 등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정관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 7. 27부터 시행한다.

② (실습사무직 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실습사무직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연금신고는 기술직으로 신고한다. 단, 직급의 구분은 아래 표에 준하여 신고한다.

기술직	실습사무직
기술직6급	실습사무직1급
기술직7급	실습사무직2급
기술직8급	실습사무직3급

③ (실습사무직 신분 및 처우 등) 실습사무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며 신분 및 처우 등은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25일(관할청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임원의 정수는 이사회 의결 즉시 시행한다.
2. (합병에 따른 이행사항) 합병법인은 ‘한국항공대학교’ 및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교명으로 유지한다.
3. (법인통합에 따른 승계) 이 정관 시행으로 폐지되는 종전의 학교법인 정석학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승계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8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0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6조의 제6호는 2020년 9월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3 명
일반직 계	12 명
2급 (참 여)	
3급 (부 참 여)	
4급 (참 사)	
5급 (부 참 사)	
6급 (주 사)	
7급 (부 주 사)	
8급 (서 기)	
기능직 계	1 명
6등급 (운 전 원)	1 명

【별표 2】

1. 인하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312 명
일반직 계	185 명
2급 (참 여)	
3급 (부 참 여)	
4급 (참 사)	
5급 (부 참 사)	
6급 (주 사)	
7급 (부 주 사)	
8급 (서 기)	
9급 (부 서 기)	
기술직 I 계	28 명
3급 (사서부참여)	
4급 (사 서 참 사)	
5급 (사서부참사)	
6급 (사 서 주 사)	
7급 (사서부주사)	
8급 (사 서 서 기)	
기술직 II 계	12 명
6급 (실 험 주 임)	
7급 (실 험 기 사)	
8급 (실 험 기 사)	
9급 (실험기사보)	
10급 (실험기사보)	
기능직 계	85 명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별정직 계	2 명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2. 한국항공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72 명
일반직 계	71 명
2급 (참 여)	
3급 (부 참 여)	
4급 (참 사)	
5급 (부 참 사)	
6급 (주 사)	
7급 (부 주 사)	
8급 (서 기)	
9급 (부 서 기)	
기술직 계	66 명
3급 (사서부참여, 실험부참여)	
4급 (사서참사, 실험기정)	
5급 (사서부참사, 실험기좌)	
6급 (사 서, 실험기사)	
7급 (부 사 서, 실험기사보)	
8급 (사 서 보, 실험기원)	
9급 (기 원 보)	
기능직 계	3 명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실습사무직 계	32 명
실습사무직	

3. 인하공업전문대학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28 명
일반직 계	44 명
2급 (참 여)	
3급 (부 참 여)	
4급 (참 사)	
5급 (부 참 사)	
6급 (주 사)	
7급 (부 주 사)	
8급 (서 기)	
9급 (부 서 기)	
기술직 계	14 명
5급 (사서부참사)	
(실 험 기 사)	
6급 (사 서 주 사)	
(전 산 기 사)	
(실 험 기 사)	
7급 (사서부주사)	
(전산기사보)	
(실험기사보)	
8급 (사 서 서 기)	
(전산기사보)	
(실험기사보)	
기능직 계	25 명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실습사무직 계	45 명
1급	
2급	
3급	

4.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1 명
일반직 계	4 명
5급 (부 참 사)	1 명
6급 (주 사)	1 명
7급 (부 주 사)	1 명
8급 (서 기)	1 명
기능직 계	7 명
7등급	2 명
8등급	1 명
9등급	2 명
10등급	2 명

5.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4 명
일반직 계	6 명
5급 (부 참 사)	1 명
6급 (주 사)	2 명
7급 (부 주 사)	1 명
8급 (서 기)	2 명
기능직 계	8 명
6등급	1 명
8등급	7 명

6.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0 명
일반직 계	3 명
6급 (주 사)	1 명
7급 (부 주 사)	1 명
8급 (서 기)	1 명
기능직 계	7 명
7등급	2 명
8등급	1 명
9등급	1 명
10등급	3 명

【별표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2,500명
일반직 계	
2급 (참 여)	
3급 (부 참 여)	
4급 (참 사)	
5급 (부 참 사)	
6급 (주 사)	
7급 (부 주 사)	
8급 (서 기)	
9급 (서 기 보)	
기술직 계	
3급 (부 참 여)	
4급 (참 사)	
5급 (부 참 사)	
6급 (주 사)	
7급 (부 주 사)	
8급 (서 기)	
9급 (서 기 보)	
기능직 계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